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등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 집행 시 사용하는 고지 정보서 서식을 개정하여 관련 정보 식별의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며,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5건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부”를 “1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3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를 “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제2항제2호 단서, 제3항제1호 단서 또는 제4항제2호 단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별지 제11호의3서식의”를 “별지 제11호의3서식, 제4항 전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로 한다.

④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복지

법」 제2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5건을 넘을 수 없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시설·기관·사업장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성범죄경력 조회에”를 “성범죄 경력 조회에”로 하고, 같은 앞쪽의 유의사항란 중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을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지 정 보 서

제 20〇〇-〇〇 호

년 월 일

귀하의 택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귀 택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전신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키·몸무게)		
전자장치부착여부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죄명, 횟수)						
부가기록		<i>#부가기록 작성예시</i> 위 고지대상자는 신규 우편고지대상자임. 위 고지대상자가 위 거주지로 전입하였음. 위 고지대상자는 동일한 읍면동내에서 실거주지가 변경됨.(변경정보등록일 : 2020.11.03.) 위 고지대상자가 위 기재된 실제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음.(변경정보등록일 : 2020.11.03.)				

유의사항

1. 이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거나 공공장소 게시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등)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지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1. 이 고지정보서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근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각각 1부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입니다.
2.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여야 합니다.
3.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고지된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국민신문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알려주시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4. 고지대상자의 공개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QR코드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직인

플레이스토어
QR코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조회 용도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운영하려는 시설·기관·사업장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경찰서장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경찰서장	→	통보
---------------	---	-------------	---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본인) 회신서

신청인 (대상자)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운영 또는 취업 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전화번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해당 없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② ----- ----- ----- ----- ----- ----- ----- <u>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 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서 신설>	2. ----- ----- ----- -- 1부. 다만, <u>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u>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u>

는 「아동복지법」 제2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 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u><후단 신설></u> 1. ~ 3. (생략)	----- ----- . <u>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5건을 넘을 수 없다.</u> 1. ~ 3. (현행과 같음)
---	--